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통영적십자병원이 집행하는 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적십자병원"이란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를 말하며, 수요물자는 통영적십자병원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통영적십자병원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영적십자병원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3조(계약이행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입찰서로 갈음한다고 명시된 경우 입찰서 제출 인정)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검사 및 검수) 납품되는 물품은 통영적십자병원의 검수를 받고 납품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수시 물품의 하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모든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통영적십자병원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영적십자병원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 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 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 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 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8조(납품기한 경과에 따른 별도 조치) 해당 계약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내 납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지체상금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계약상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기관에서 공고하는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당업자처제 처분, 처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의함)
2. 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을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을 거부할 권리를 가짐

제9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1.07.01. 시행)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통영적십자병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현금으로 통영적십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0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영적십자병원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대금청구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비용할인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금의 청구 및 검사검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 의하여 대금결제 기일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 따른 비용할인을 적용한다.

구분	거래가있는 날부터 대금 결제일까지			비고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할인율	1.8%	1.2%	0.6%	

- 제11조(대가의 통영적십자병원 직접지급)** 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제12조(하자보수)** ①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3년 이상(입찰참가시 제출한 제안서에 의함)으로 한다.
- ② 계약물품의 사용 중 하자 발생시 통영적십자병원은 즉시 이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내용을 접수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 동종의 제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 ③ 무상하자보수의 범위는 장비 및 장비에 따른 일체의 부품(소모성 포함)을 포함한다. 단, 부품에 속하지 아니하고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1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통영적십자병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계약상대자가 통영적십자병원의 납품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때
3. 계약품목과 다른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납품된 물품이 해당 성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통영적십자병원이 반품·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한 때

- 제14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5조(특허권 등의 침해분쟁)**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16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입찰공고문
3. 물품구매 규격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8조(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경쟁입찰의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 이후 즉시 계약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납품장소) 납품장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통영적십자병원 수술실로 한다.

제21조(안전관리)

1. 납품 설치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를 제출한다.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